

〈연구개발특구 규제혁신 과제(아이디어) 제안서〉

규제 혁신 제안 과제	혁신제품 지정시 규격서 또는 최소한의 인증 관련 부처가 제시해야
분 야	☐ 연구개발 ☐ 신산업 ☐ 기술창업/ ☐ 기업성장 ☐ 개발관리/ ☐ 기타 기술사업화 인프라
관련 규정· 제도/법령	
소관 기관	소관부처, 소관지자체 등
규제 내용	○ 신기술의 시장진입을 원활하게 돕기 위하여 혁신제품지정제도를 정부부처와 조달청이 시행하고 있음. 그리고 혁신제품 지정과정에서 조달청과 지정부처에서 규격서 또는 최소한의 인증을 필요로 하고 있음.
문제점 및 개선 필요성	○ 그러나 인증단계에서 혁신제품 중 일부 제품은 아예 신제품으로 최소한의 인증 내용이 불분명한 상태인 제품이 있을 수 있으나 이에 대한 제시는 기업에 의뢰하고 있어 인증단계에서 어려움을 겪는 기업이 발생하고 있음.
규제개선 방안	○ 따라서 규격서나 최소한의 인증 내용을 정부에서 제시하는 것이 적절한 것으로 보임. 규격서 예시 또는 최소한 인증 여부 정부가 제정하거나 혁신제품 신청단계 부터 사전에 제시할 필요성이 있음.
기대효과	○ 대부분의 혁신제품의 융합기술이나 새로운 기술로 기존 최소한의 인증이 명확하지 않을 수 있어 ks, kC, 전기인증, 전파인증 등을 정부에서 제시하여 기업의 부담을 줄여 혁신제품의 개발을 촉진할 필요.
비고	○ -